



캘리포니아의 보호 및 지지 시스템

www.disabilityrightsca.org

수신자부담 전화: (800) 776-5746

TTY: (800) 719-5798

#1: 발달 장애 서비스 &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주 예산 삭감에 대한 사실 개요 – 2009년 7월 28일

소비자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 옵션¹

주 입법부는 DD 예산을 3억 3,400만 달러 삭감하도록 발달 서비스 부처(DDS)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 사실 개요는 귀하의 데이 프로그램, 그 변경 내용의 예외 사항들, 지역 센터가 귀하의 서비스를 변경하려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법규가 어떻게 변경되었나

지역 센터들은 현재 수요자들이 낮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재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규에 의거 또 다른 옵션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은 현행 주간 프로그램 대신 일거리를 개발하거나 유지하고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지역 센터는 수요자 각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매월 이 옵션에 대하여 20시간 내지 80시간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¹들은 Budget Trailer Bill (TBL) ABx4 9의 일부입니다. http://info.sen.ca.gov/pub/09-10/bill/asm/ab_0001-0050/abx4_9_bill_20090728_chaptered.pdf에서 법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복지 & 기관 코드, 4688.2 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자들은 수요자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²

- 행동 관리
- 활동 센터
- 성인 개발 센터 성인 주간 프로그램
- 커뮤니티 통합 훈련 프로그램
-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수요자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면,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IPP) 미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IPP 미팅에서, 지역 센터는 귀하께 정보를 제공하고, 이 옵션을 귀하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은 옵션일 뿐입니다. IPP 미팅에서,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현행 주간 서비스 계속; 2)새로운 맞춤형 대안 옵션; 또는 3)지역 센터에 다른 서비스 옵션 요청.

지역 센터가 귀하의 서비스를 변경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나?

지역 센터가 귀하의 데이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IPP 미팅을 열고 변경에 관하여 귀하와 합의를 하거나, 귀하께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³ 통지는 변경 내용이 적용되기 전 30 일 이내에 주어져야 합니다.⁴ 통지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 지역 센터가 취하는 조치;
- 지역 센터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조치에 대한 이유
- 발효일; 그리고
- 그 조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규, 규정 또는 정책.⁵

귀하께서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시면서 지역 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받으시려는 경우, 통지 수령 후 10 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을

² 이 부분은 TBL 법제화 즉시, 즉 2009년 7월 28일부로 발효됩니다.

³ 통상 귀하께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결정은 IPP 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646.4(a)-(c). 그렇지만, 법률은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IPP에서 서비스를 축소, 종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30 일 기한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10.

⁴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10.

⁵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01. 정보는 귀하께서 이해하시는 언어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 일 이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⁶
그렇지 않으면, 30 일 이내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⁷

지역 센터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하여 더 중요한 정보를 원하시면, 사실 개요, “정당한 절차 및 청문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⁶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15.

⁷ 복지 & 기관 코드 조항 4710.5(a).